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 
2021. 12. 9.(목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2022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 
운용계획안**  
(경제환경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2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설치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 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으로 재활용품 사업, 분리배출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

나.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

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가능 자원의 수거율 제고 등

## 5. 2022년도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

### 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㉠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	290,856	27,000	17,000	10,000	300,856	

### ○ 자금 운용 계획

#### 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27,000	27,000	0
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	21,000	21,000	0
공고예금 이자수입	6,000	6,000	0

#### 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17,000	17,000	0
재활용 수거운반비	4,000	4,000	0
소모품 구입	2,000	2,000	0
홍보물 제작	11,000	11,000	0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기금 개요

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·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1995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음.

### ○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#### 수입내역은

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,100만원

예금이자수입 600만원

#### 지출내역은

재활용 수거운반비 400만원

소모품 구입 200만원

홍보물제작 1,100만원

- 2022년도 기금사업의 주요 방향은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제고에 있으며,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 
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 
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 
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 
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 
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 
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 
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 
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6.7.18>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관할지역 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<개정 2016.7.18, 2020.9.18>
2.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에 수입금 <개정 2016.7.18>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8>  
[본조신설 2016.7.18.]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·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
2.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(단,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) <개정 2020.9.18>
3.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